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89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9월 5일(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화)

2. 제출사유

마포구립예술합창단 조례 규정중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가.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 규정 개정(안 제5조)
- 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동 조례 시행규칙의 삭제(안 제14조)
- 라.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연임에 관한 적용례 규정 신설
(부칙 제2조)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5.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구립예술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문맥에 따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 되었음.
- 먼저 안 제3조(운영) 제1항, 안 제7조(단원 등의 자격) 제1항제2호, 제3항, 안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4항 등은 각각의 조문내용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순을 자연스럽게 하는 등 그 뜻이 간결하고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살펴보건대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구성)제3항에서는 현 조례에 구립예술합창단 정원을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이 규정의 취지와 현재의 합창단 운영 현황을 보건데 합창단별 정원이 각각 60명 이내로 표기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비한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있음.
- 안 제8조(위촉)는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 없는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휘자 및 반주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특별히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은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제8조 제3항에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다’고 하는 문장은 생략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개정안 제7조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개정하고 있으

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 제10조제3항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를 ‘수탁자는 구에서’로 수정이 필요할 것임.

- 그 밖에, 지휘자 및 반주자와 관련된 조례의 규정과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입법원칙에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단원 등의 자격) 제2항에는 지휘자와 반주자의 자격요건으로 ‘음악 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반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행규칙 제8조¹⁾에서는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 반주자 역시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명시하여 응시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 규칙의 규정 범위는 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정해야 함에도 지휘자 또는 반주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그리고,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휘와 반주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를 ‘4년제 대학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각종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학력차별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서 규칙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구립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개 자치단체로 파악되며 그 중에서 지휘자 등의 모집 요강에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마포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 3곳에 불과함.

1) 제8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립예술합창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9.>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불임 1**전국 시,군,구 구립합창단 운영 관련 조례 현황****<22.09. 기준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포함 총 14곳)>**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안무자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자격) 합창단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등의 전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반주자와 트레이너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4조(위촉)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0. 5> 1.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고 합창단 지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있는 자중 지휘자 의견을 참고한다. 3.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합창단 설치 · 운영조례	제5조(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 ① 여성합창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② 청소년합창단원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5.2.27, 2019.5.17.> ③ 청춘실버합창단원은 56세 이상의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④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7.9.21.>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p>⑤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1.></p> <p>⑥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p> <p>⑦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9.21.></p> <p>⑧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19.5.17.></p>
6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6조(단원의 자격)</p> <p>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거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p>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p> <p>③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p>
7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4조(자격)</p> <p>① 단원은 동대문구 거주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지휘자는 4년제 정규대학 음악전공자로 하고,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p> <p>③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p>
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 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p>제6조(단원의 자격)</p> <p>① 합창단 단원은 구 지역 안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만19세 이상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p> <p>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만7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9.22></p> <p>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6.9> <개정 2016.9.22></p> <p>④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6.9> <개정 2016.9.22></p>
9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p>제8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p> <p>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구립예술합창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9, 2022.9.15></p> <p>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9.15.></p> <p>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p>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9.15.> 3. 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한 합창단 및 실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을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자,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7.30] <개정 2020.7.9, 2022.9.15.>
10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신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또는 일간신문,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 경력 기재) 1부 3.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11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자격) ① 단원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 신규단원은 만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 단 성악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반주자는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2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휘자 등의 선발) ① 지휘자, 반주자는 사회적 지명도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단장, 지휘자가 한다.[제목개정 2014.7.10.][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4.7.10.>]
13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 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 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무장은 4년제 대학 이상 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4.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을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로 한다.
14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p>제5조(전형)</p> <p>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지휘자 및 반주자는 능력·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p> <p>2.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체육과장이 한다.</p>
15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p>제4조(자격)</p> <p>①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1/3 범위 내의 단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3. 6.20)</p> <p>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p> <p>③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2. 5.18)</p> <p>④ 단원은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2. 5.18)</p>
16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6조(자격 기준)</p> <p>①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된 단원은 전출, 전학 등의 사유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p> <p>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거주지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p>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p>제3조(단원의 선발)</p> <p>① 지휘자와 사무장은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하고 반주자 및 나머지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